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44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이재명·정성호·안도걸

임광현 · 최기상 · 이정문

진성준 · 정태호 · 황명선

박홍근 · 김태년 · 신정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민간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화

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시켜 소비진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하여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로. "제4호 및 제5호"를 "제4호·제5호 및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 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하"를 각각 "제5호의2에 따른 지역화폐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 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등사용분"을 "대중교통이용분·도서등사용분 및 지역화폐사용분"으로 하고, "전통 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지역화폐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직불카드등사용분" 을 "직불카드등사용분, 지역화폐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다목1) 중 "100분의 40"을 "1 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8 0"로 하고, 같은 목 2)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 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대 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80"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제3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항 에서 "지역화폐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80
- 3. 제2항제5호의2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 기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 과 같음) 략)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호 · 제5호 및 제5호의2----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 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 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 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u>제5호의2에 따른 지</u>
	역화폐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은 제외한다. 이하
2.	
	<u>제5호의2에 따른 지</u>
	역화폐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은 제외한다. 이하

경우에는	100 번 ል	OO)
ター 別一	100元号	\circ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 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 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 0)

가.・나. (생 략)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 분 및 도서등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3.	
	-제5호의2에 따른 지역화폐사
	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
	다. 이하
	가.・나. (현행과 같음)
4.	
	-NZ -F 10 H
	<u>대중교통이용분</u>
	·도서등사용분 및 지역화폐
	<u> 사용분</u>
	<u>전통</u> 기자기 9 보 - 미즈고통시 9 보
	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지역화폐사용분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 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 교통이용분, <u>직불카드등사용</u> 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 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 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신 설>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 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J.
지보기ㄷㄷ시요ㅂ 기여취레시
<u>직불카드등사용분, 지역화폐사</u>
<u> </u>
5의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
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지역화
폐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
<u>의 80</u>
6
,

가. • 나. (생 략)

-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 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 액
 -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 등사용분 + 도서등사용 분) × 100분의 30 + (최 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 직불카드등사 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
 분 × 100분의 15 + 직불
 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가.•나. (현행과 같음)
다
1)
1)
100분의 40 + (최저사
용금액 - 신용카드사용
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전통
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
용분) × 100분의 80
2)

 $\widehat{10}$

30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 카드등사용분) × 100분 의 40

7. (생략)

③ ~ ⑨ (생 략)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 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 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 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 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 2. (생략)

<신 설>

100분
<u>의 40 + (최저사용금액</u>
- 신용카드사용분 - 직
불카드등사용분 - 전통
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
용분) × 100분의 80
7.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①
,
1.・2. (현행과 같음)
3. 제2항제5호의2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